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보고서

Text **('25上 평가번호 : 28)**

Special

개인·법인	업종(코드)	조사유형	외형구간	조사청
법인	제 조(321000)	비정기	200억원대	지방청

Text I 조사성과(결과)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 Text (주조사대상_A법인) '9X년 설립된 전자부품 제조법인(코스닥상장)으로,
 Text 안테나·로봇사업부를 두고 영업 중이었으나,
 - Text '17~'20년 중 ㈜〇〇여행사 등 7개 여행사의 지분 100%를 단계적 Text 취득, 합병하여 **인바운드 플랫폼 여행사업부** 조직을 운영함
 - Text * (인바운드 플랫폼 여행사업부) 중국 구매대행업자(따이공)을 면세점으로 Text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업
 - Text A법인은 ㈜○○여행사 등 **7개 여행사 지점을 이용,** ○**조원* 규모의**
 - Text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바, 7개 면세점에 대하여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 Text 발급하고, 23개 여행사로부터 '모객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함
 - Text * 매출 ○천억원, 매입 ○천억원 세금계산서 수수하였으나, 매출 순액으로 인식
 - Text 한편, A법인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수차례의 유상증자와 Text 전환사채 발행, 신사업 유치를 통한 **주가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 Text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관련 B법인**과 '사주의 처 김〇〇'을 포함한 Text 9개의 관련인 동시 조사를 진행하고, A법인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함
- Text (관련인_B법인) '20년 '경영컨설팅업'으로 설립, 매출이 전혀 없다가
 - Text 갑자기 주식처분이익 수십억원을 발생시켜, 고액체납을 만들고
 - Text 무단전출, 직원이 없고 대표이사가 소명이나 출석요구에 비협조
- Text (관련인_사주의 처 김ㅇㅇ) 그룹 사주 K의 배우자로, 경영에 참여
 - Text 하지도 않으면서,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장부상회사)의 지분을 보유
 - Text (나머지 50%는 사주 K의 어린 조카 박〇〇 보유) 명의신탁 조사 착수함

Text 나. 적출성과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I	연번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1)	가공세금계산서	20402	최상위여행사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수수 관련 과세
	2	자산수증이익누락	10104	가공차입금 처리한 법인계좌 입금액 자산수증이익 신고누락 경정
	3	허위 가지급금 소득처분	11606	대여금으로 위장한 귀속자불분명 사외 유출금액 대표이사 상여처분
	4	명의신탁증여의제	50203	지인, 인척 명의로 보유한 차명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결정

Text ① (최상위여행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과세

Text -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최상위여행사'에 대한 과세는 **'도관업체 중위**

Text 여행사'나 '폭탄업체 하위여행사'에 대한 조사 보다 가공거래 입증이

Text 어렵고, 최근 최상위여행사 사건도 증명 부족으로 대법원 '국패'함

Text - 그럼에도 본 건은 모객용역 사건 판결에서 요구하는 **개별적 판단**

Text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입증할 수

Text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 과세근거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됨

Text * 인접 상하위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Text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대가의 지배·관리·처분내역,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 고려

Text - 전례 없는 최상위여행사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과세'

Text <mark>결정 건으로, 조사과정에서 과세와 처분유지를 위해 **심의팀과 적극**</mark>

Text 협업(세액 50억원 이상 의무심의)한 바,

Text - 동일 유형의 최상위여행사 및 면세점 가공매입 파생자료에 대한

^{Text} 향후 조사 시 그 활용가치가 우수함

Text * 통상 범칙조사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나, 본건의 쟁점인 Text '실제 용역제공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적극적으로 위원회 상정에 노력, '과세'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선례를 남김

- Text ② (가공차입금) 법인계좌 입금액 자산수증이익 신고누락 경정
 - Text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거래처 입금액을 '가공차입금(가공부채)'으로
 - Text **보아 법인의 익금 산입 과세**한 바, 통상적인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에
 - Text 대한 과세와 다르게 기존 사례가 없고 어려운 조사항목에 해당함
 - Text 거래처 '배관업체'와 공모, 자금을 빼돌려 B법인에 은닉한 것으로 판단, 거래처가 '가공대여금'을 수정신고(납부 ○억원)하고, 관련인
 - Text 확인서와 진술서를 중요한 단서로 활용, 불복 없이 조사 종결함
- Text ③ (허위 가지급금) 귀속자불분명 사외유출금액 대표자 상여처분
 - Text B법인이 주가조작 의심 주식으로 수십억원의 매각차익을 실현,
 - Text 세금도 체납하고 전부를 현금 출금, 수표 추적을 통하여도 실질
 - Text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즉시 대표자 상여 처분한 바, 본 건은 사전에
 - Text 치밀하게 계획한 고도의 지능적 탈세행위에 해당함
 - Text 주식매각차익 전부를 횡령할 목적에서, 실체도 없는 B법인의 대여금
 - Text (가지급금)으로 위장하여 사외유출 사실을 은닉한 바, 적시성 있는
 - Text 조사로 대응하여 법망을 교묘하게 벗어난 편취 행위를 적발함
 - Text * 도전적 과세로 과세전적부심 청구 들어왔으나, 심의팀과 참석하여 적극적 Text 의견진술로 불채택 결과를 이끌어냄
- Text 🕢 (명의신탁) 지인·인척 명의로 보유한 차명주식 증여세 결정
 - Text 차명재산은 재산신탁자와 명의대여자 간 '침묵의 카르텔'로 적발이
 - Text 어렵고, 사주일가의 명의신탁 행위를 적발하여 과세하는 증여세는
 - Text 일반 항목에 대한 과세 보다 사회에 대하여 큰 파급효과를 창출,
 - Text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함
 - Text 명의신탁 관련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주거나 차명보유한 사실을
 - Text 인정하는 **확인서를 확보**하고,
 - Text 금융추적으로 주식 **취득자금 증여**까지 증거를 확보하여 **범위확대**
 - Text 함으로써 **능동적이면서도 끈질긴 조사역량을 발휘,** 사주일가에
 - Text 대한 증여세 조사를 **불복 없이 종결함**

Text III 조사노하우

Special

적출①

❖ 가공세금계산서 (항목코드: 20402)

(최상위여행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과세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O (언론보도) 면세점 송객수수료 업계 최상위여행사에 대하여 검찰의

Text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송객수수료 거래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Text 점조직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뤄진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의 전모를

Text 최초로 명확하게 밝혀냈다는, 동종 여행사 관련 보도자료가 있었음

Text O (공시자료) A법인이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최상위여행사'인 점을 Text 감사보고서에서 포착하고, 언론보도와 유사한 거래구조를 착안함

Table 공시 감사보고서 中

당사는 국내면세점에게 송객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용역은 면세점으로부터송객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 협력여행사에게 송객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당사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수익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 거래에서 면세점과 협력여행사의 대리인으로 판단되어 매출을 순액으로 인 식합니다.

- Text O (신고자료) A법인(코스닥상장)은 본래 안테나와 로봇 등을 제조·판매 Text 하던 법인이나,
 - Text 갑자기 '17년부터 여행사법인의 지분을 인수, '20.12월 종속여행사 Text 7개를 흡수합병, 업종에 여행사업을 추가, 7개 여행사는 지점 등록함
 - Text ※ A법인의 여행사지점(7개)은 면세점에 대하여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천억의 Text 세금계산서를 발급, 중위여행사(24개)로부터 ○천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 Text O (파생자료) A법인의 과세자료 중 가공·위장매입자료 건이 전체 Text 매입의 99.9%로, 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등 확인됨
- Text 중위인지 최하위인지도 알 수 없는 여행사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Text 수십 건이 확인되어,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건(件)마다 분석함
- Text O (관련 법령, 판례) 적법과세를 위해 법령, 판례 등을 심층 검토
- Text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수의
 Text 물증 확보에 노력하고, 관련자의 조사이력, 자금흐름을 적극 검토함
- Text 최상위여행사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현재 단 1건이나, 국패 결정되어
 Text 패소 원인을 상세 분석, 조사 단계에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

Table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Table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Table 판례 대법원 2023두52697, 2023.11.30. 外 다수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u>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u>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의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Table 판례 대법원 96누617, 1996.12.10.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Text O (착안사항) 다른 여행사 쟁점과 비교 시 특이점은 A법인의 '여행사

Text 지점이 7개'라는 단서에서 포착하여, 각각의 지점이 송객용역을

Text 제공할 인적·물적 시설이 있었는지,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Text <mark>주체와 일치하여 수수되었는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mark> 착안함

Text ※ 여행사 지점은 형식적으로 상호만 7개로 구분, 개별 인적·물적 시설 없이 Text 본점의 여행사업부 소속의 직원들이 매출과 매입 업무를 나누어 수행

Text ⇒ 용역 수행 지점을 특정할 수 없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Text **2. 조사기법**

^{Text}│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O (조세범칙조사 진행) A법인에 대한 가공매입 관련 파생자료 금액을
Text 근거로 즉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로 전환,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

Text - A법인은 수차례 중지 요청, 권익위 고충 신청, 결과통지서 수령 거부

Text (직원 휴가, 폐문 부재 등) 방식으로 조사방해를 시도, 조사팀은 적법

Text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노련하게 대처하여 과세목적을 달성함

Table 증거 중요 통지 과정을 사진, 동영상으로 녹화, 송달 불복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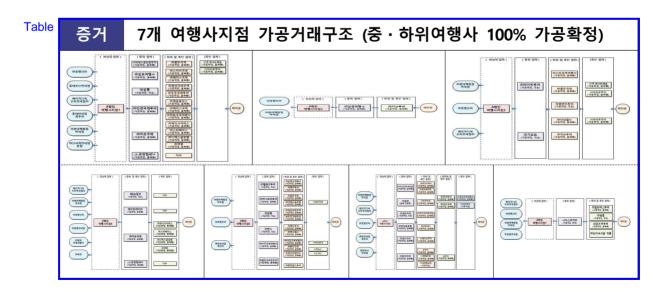
Text O (다양한 증거자료 확보) 각 여행사간에 비정상적인 현금전달 행위를
Text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과세논리와 대법원의 개별적 판단
Text 기준에 입각, 중하위여행사의 가공거래 확정자료를 적극 수집함

Text * 수수료 거래구조 전체를 확인하기 위한 종결보고서. 불복이력. 과세자료 수집

Table 증거 중하위여행사 종결보고서 中 (중·하위여행사 100% 가공확정)

- ㈜○○국제(A법인 여행사지점의 매입처)
- 대표자 ○○는 '23.09.08. 중국 출국 후 '24.02.07. 직권폐업됨
- 매입처 ○○㈜(가공확정 163,543백만원)은 '22.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 매입처 ○○㈜(가공확정 152,979백만원)은 '23.03.31 직권폐업된 업체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 매입처 ㈜○○(가공확정 152백만원)은 '22.2기 및 '23.1기 귀속 전자세금 계산서 조기경보가 발령되어 구로세무서 조사과에 조사의뢰되어 있음

Text - 각 여행사지점별 송객수수료 거래구조(면세점~최하위여행사)를 완성,
Text 어느 단계에서도 실제 용역 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철저하게 입증함



- Text O (거래상대방 자료 확보·검증) 각 면세점에 대하여 A법인의 여행사 Text 지점들과 거래사실 확인가능한 자료를 공문 요청하고,
 - Text 각 면세점이 제시한 계약서(구체적인 수수료 내역도 형식적으로 작성)와
 - Text 정산서(판례가 따이공 송객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단순 금액 정산
 - Text 업무에 해당), 가이드 인적사항(어느 소속인지도 확인불가능, 각 여행사
 - Text 들은 가이드를 고용한 사실 없음)을 검증
 - Text 면세점에 대한 송객용역의 실체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힘
- Text O (관련인 문답, 확인서 징취) A법인은 사실상 폐업하여 각 여행사
 - Text 지점들이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마치 과거에는 인적·물적으로**
 - Text <mark>구분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것처럼 위장</mark>하려 하였으나,
 - Text 여행사업무를 담당했던 퇴사 직원(대표이사 포함 9명)들을 대상으로 Text 과거의 조직도, 업무분장, 업무수행내역 등 문답을 진행,
 - Text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진실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는 Text 답변들을 심문조서에 담아내는 집요한 근성을 발휘함

Table 증거 직원 문답서 中

- 문 정산자료에 나오는 가이드가 실제 가이드인가요?
- 답 협력사의 가이드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으며, 가이드가 실제 가이드인 지는 알지 못합니다.
- 문 면세점 계약이 여행사 지점의 매출이 발생 여부하고는 관계 없이 각 7개 지점과 동시에 체결을 했더라구요. 그 이유를 아시는지요?
- 답 뭐 그 면세점을 언제 쓸지 모르니깐 계약할 때 한꺼번에 하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깐...
- 문 여행사지점이 면세점에 대해서 발급한 세금계산 서에는 품목이 수수료나, 송객수수료, 인센티브라고 되어있는데, 송객수수 료나 인센티브가 무엇인지요?
- 답 인센티브는 예를 들어서 목표금액이 있으면 도달했을 때 주는 거고, 송객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인데, 손님와서 물건을 사면 페이백을 말하는거죠.

Table 증거 조세범칙혐의자(대표이사) 심문조서 中

- 문 7개 여행사지점이 별도의 사업장 구분이 없 이 하나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들 은 여행사 지점별로 소속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까?
- 답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지점별로 담당 직원은 나뉘어 져 있었으나, 각 지점별로 소속된 직원은 하나다.
- 문 그렇다면 7개 여행사지점 업무를 하나의 사 무실에서 소속 직원 구분 없이 여행사지점 전체 매출과 매입 업무를 같이 수행하였다는 것입니까?
- 답 네. 그렇습니다.
- 문 그러면 결국 면세점에서도 가 면세점에서 수취하는 금액 중 우리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따이공에 돌아간다는 것을 알 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 답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면세점 마케팅 부서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표를 확인하고 다른 면세점과 경쟁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 Text O (확고한 과세논리 제시) A법인 여행사지점 관련 조사는 합병

 Text 전·후로 나뉘어 당초 세무서 2곳*에서 장기간 중지 상태였으며,

 Text 종결 시 관련 추징세액이 O천억원대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 Text ★ 합병前 여행사법인 7개(○○○세무서), 합병後 여행사지점 5개(○○○세무서)
 - Text 사건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심의팀, 송무국과 불복 공동 대응을

 Text 전제하고 쟁점 예상, 선행사례 수집, 판례 분석, 답변서 작성 등

 Text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심충토론 등 협력을 충실히 함
 - Text <u>- 일관된 과세논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세무서 조사팀에 종결</u>
 Text 보고서, 보충조서, 문답서, 심문조서 등 모든 증거자료를 제공함
- Text O (사후관리 철저)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Text 위반으로 검찰에 신속하게 고발하고,
- Text 7개 면세점에 대한 가공매입 자료파생 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Text **'과세' 의견을 첨부**하여 근거 있는 **과세방향을 적극 제시**하였으며,
- Text 진행 중인 심판청구 사건도 고액 중요사건으로 판단, 심판대리인

 Text 선임하여 처분유지 강화에 힘씀

Special

적출[2]

❖ 자산수증이익 (항목코드: 10104)

(가공차입금) 법인계좌 입금액 자산수증이익 신고누락 과세

Text **1. 조사착안**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Text O (인터넷 정보) 주가조작 기사 검색 중, 계열사 지분 인수와 관련

Text 이상한 '배관업체'가 끼어있고, 그 배관업체가 규모상 몇백

Text 동원할 수 있는 회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개인 투자자의 블로그를

확인, 해당 '배관업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짐

Table 블로그 개인 투자자의 블로그 내용 中

> 는 가 보유한 지분 중 32.70%를 422억원에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는 계열사인 지분 11.78%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지분은 를 통해서도

. 와 라는 곳에서 140억원에 매입키로 계약했죠. 의 관계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 역시 배관자재 회사입니다. 가 모두 배관자재기업이라는 공통

점이 있습니다.

아 는 그 만한 자금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는 자본금

1,000만원에 자산총액 2억2100만원의 영세업체로 순자산이 (-)9,800만원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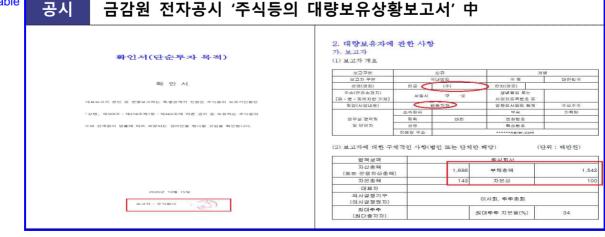
도 자본금 1억원에 자산총액 17억원인데, 부채가 15억원이 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몇 백억

원을 동원할 수 있는 회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Text O_ 계열사의 보고서 중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공시자료)

사업자 정보와 지분 보유목적(단순투자)을 확인함

Table 공시



Text ○ (신고자료) 배관업체가 자발적으로 '가공자산·가공부채 계상 및

Text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을 시인하여 '20년 사업연도

Text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억원을 납부

Text - 그 내용이 상당히 이례적인 데다가, 파생자료의 거래처가 다름 아닌

Text B법인으로 확인, 배관업체로부터 빼돌린 이익을 B법인의 차입금

Text 계상하였다가, 추후 상환을 위장한 반환을 계획했을 것으로 착안함

Table 신고 배관업체 수정신고 관련 세무조정

(원)

구분	항목	금액	처 분
익금산입	가공부채(차입금)	$ \sqrt{2} $	유보
손금산입	가공자산(대여금)	q	△유보
익금산입	가공자산(대여금)	$ \sqrt{2} $	기타사외유출

* 가공자산: B법인 대여금 ○○억원 자료파생 → B법인의 가공차입금

Text ○ (관련 법령, 판례) 정당한 과세논리 유지를 위해 배관업체를 직접

Text **현장확인,** 가공대여금 계상 경위와 수정신고 이유 관련 확인서를

Text 징취, 관계자의 진술서를 확보함

Table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Table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Table 시판례 조심 2015서2748 2015.11.05.

(쟁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단기차입금 및 선수금과 00의 회계장부상 단기 대여금 및 선급금이 사업연도별로 각 동일하고, 청구법인이 00에 대한 단기 차입금 및 선수금을 00의 <u>폐업 시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u>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O (범위확대) 배관업체의 수정신고에 의해 파생된 자료 분석한 결과,

Text 최초 차입금(가공부채)를 계상한 과세기간에 대한 범위확대가 필요,

Text 적법성에 문제가 없도록 절차준수에 만전을 기함

Text O (수정신고 경위 확인) 배관업체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참고인조사

Text 과정에서 밝혀진 관계사 지분 인수·양도 자금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

Text 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수정신고*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확인함

Text * 배관업체가 단순 세무조정만 변경하는 수정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해당

Text <mark>수정신고로 인해 납부한 세금이 ○억원으로 적지 않음</mark>

Text O (거래처의 자금 회수 의사 확인) B법인이 정상적인 금전대차 거래

Text 라고 계속 주장, 채권의 당사자인 배관업체를 직접 방문하였고,

Text - 가공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대여금 명목의 자금에 대한 회수**

Text 의사가 절대 없음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차후 수정신고 내용을

Text 번복할 가능성을 일체 차단함

Table 증거 거래처 현장확인 및 확인서 확보 < 확 인 사 실 > 1. 2024.8.19. 당사는 조사팀에게 붙임1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 당초부터 당사가 ㈜ 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는 이자 명목으로 ㈜ . 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Steal) 에 내 U ! · 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확인서 작성일 3. 당사가 ㈜ 현재 ㈜ 로부터 돌려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4. 2022년 중 당사는 ㈜ :로부터 원을 입금받았으나 해당 금액의 법적 성격은 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 아닙니다. 당사가 ㈜ 로부터 원을 입금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 습니다. |가 당사의 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

Text O (금전대차계약 반박자료 확보) B법인은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시 Text 하였으나, 약정내용과 달리 이자 지급내역이 전혀 없었고,

Text - 차입금 상환이라는 이체내역도 배관업체가 계좌 도용 등으로 얽혀

Text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 B법인에 손해배상을 요청하여 받은 것으로

Text 확인서 작성 등, 성실한 자료 확보로 과세 완결성을 높임

Text O (불복 없이 종결) 가공차입금으로 보아 법인계좌 입금액을 자산수증

Text 이익 신고누락 경정하고 법인세 ○억원을 고지하였음에도, 최종

Text 불복 제기 없이 성공적 과세로 종결되어, B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Text 전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됨

Text * B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쟁점은 제외

Text O (공모한 허위거래 적발 사례) 주가 조작과 연루된 자*들이 획득한 Text 자금을 빼돌려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의 대여금, 차입금, 가지 급금 등으로 변칙 계상하는 새롭게 출현한 신종탈루** 유형으로,

Text - 진화하는 탈세수법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한 조사 사례로서 중요한 Text 의의가 있음

Text * B법인은 사업장 무단전출 상태로 실체가 없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Text 볼 수 없으며, 수십억원의 주식처분이익만 발생시키고 관련 세금은 체납함

Text ** 해당 주식처분이익을 전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태로 빼돌림(적출 3번)
Text 가지급금은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소득처분으로 즉시 과세

Special

적출③

❖ 귀속자불분명 사외유출금액분 (항목코드: 11606)(허위 가지급금) 귀속자불분명 사외유출금액 대표이사 소득처분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O (언론보도) B법인*이 '20.12월 H법인이 발행한 제13차 전환사채를 Text 40억원에 인수한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함

Table 기사 BLO○○○ 202○.○○.○○. 보도자료 中

은 29일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전환사채 인수자는 각각 100억원(보통주 570만주)과 40억원(228만주)어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 괴 로

Text * B법인은 '20.9월 '경영컨설팅업'으로 설립, 사업장은 소호사무실(무단전출확인),
Text 외관상 H법인과 특수관계는 없으나, 등록된 연락처가 H법인의 직원임

Text → 시기상 전환사채 인수 목적의 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했을 개연성이 확인됨

Text O (공시자료) H법인이 13회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직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387원)을 하였고,

Text -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조정'에 따라 '21.2월 전환가액을 Text 1주당 1,755원에서 유상증자 가액인 387원으로 하향 조정함

※ <u>B법인은 전환가액 조정(@1,755→@387원)에 따른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u>
Text 전환 취득할 수 있었던 점이 포착됨

Table	공시 1	13회 전환시	사채권 부	발행결정
		전환가액(원	실/주)	1,755
		전환에 따라	종 류	㈜ 기명식 보통주
	전환에	발행할 주식	조식소	2,279,202
	관한	전환청구기	[간	2021년 12월 28일 ~ 2023년 12월 27일
	사항 전환		조정	1. 본 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u>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u> 이전에 발행회사가 직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 <u>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u> <u>전환가격으로 조정</u> 하며,,,(이하 생략)

Text ○ (신고자료) B법인은 '22년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장부상
Text 이익잉여금이 ○○억워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Text - (대여금 계상) '22년말 대여금 ○○억원, 현금성자산은 ○백만원으로 Text H법인의 전환사채를 주식 전환, 곧바로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 전부가

Text 대여금 형식으로 사외유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함

Text * B법인은 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법인세 〇억원을 체납하고도,
Text 이미 사외유출된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체납처분을 교묘하게 피함

Table

		표준제목 (일반법	구상티 법인용	표)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HI OLDH	조사원 대		0000141031	2101 6170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주식회 사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ᅄ
l .유동자산	001	6,138,283,618					
(1)당좌자산	002	5,994,844,379				S	
1.현금 및 현금성자산	003	1,753,379				F-2:	
5.단기대여금	024	5,993,000,000				-:	
다. 기타단기내여금	1029 1	5,993,000,000					

Text O (관련 법령, 판례) 직원도 없는 B법인이 스스로 자금의 행방을 소명 Text 하지 못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 대여금 처리하여 자금 회수를

Text 위해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법리에

Text 따라 엄정하게 대응함

시고 표주재무상태표 中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 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Table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Table 판례 대법원 2006다49789, 2008.09.18.

법인세법상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음

Table 판례 헌법재판소 2005헌바107, 2009.03.26.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점 및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는 법인의 사정에 정통하여 법인의 다른 구성원이나 과세관청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고려된 것임

Table 판례 대법원 2018두47691, 2018.10.1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될 당시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O (자료확보) B법인은 현재 사업장이 없고, 대표이사가 고의로 연락을

Text 피하여, 일시보관조사로 착수하였음에도 업무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Text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Text - B법인은 개업 이후 매출이력이 전혀 없고,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주식

Text 전환하여 주식매각차익을 **단기간에 실현시킨 1회성 거래가 전부**로,

Text - 전환사채 발행 H법인에 요청하여, 계약 당시 서류 확보하고 법인

Text 등기사항 조회, 압류 관련 서류 확인, 재산 등 정보분석함

Text O (현지확인) B법인의 소재지로 출장하여, 사업장불분명, 사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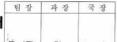
Text 체납현황, 채권 회수내역, 사업의 지속성을 확인, **'사업자등록 말소**

Text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24.9월 관할 세무서로 협조공문 발송함

Table

판례 사업자등록 말소 검토조서(직권폐업) 공문 발송

사업자등록 말소 검토조서



□. 인적사항

- O 사업장: , ', 6-113호(동, 빌딩 O 상 호 : 주식회사 . O 사업자등록번호: 용 -
- O 대표자 : _ O 주민등록번호 : ___1
- O 업 종 : 서비스업/경영컨설팅
- O 개업일 : 2020.11.12.

Ⅱ. 확인 내용

- 사업장 전화번호는 관계회사의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확인되며 지급 명세서상 직원 없이 대표자만 존재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대표자 및 사업장 연락처 등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조사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미회신함
- '24.09.10. 사업장 재방문 하여 임대인 · ㈜에 확인 요청한 바, ㈜ 는 '23.9월~11월 임차료 미납 사유로 '23.11.30. 이후 계약 해지되어 전출됨을 확인
- (사업구조) '20년 개업일 이후 매출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22년 영업 외 수익에 대한 범인세를 신고함
- 다만, 해당 영업외 수업은 관계회사 전환사채를 취득 후 처분으로 얻은 수익으로 7,216백만원에 불과하며, 이외 다른 수익 내역 없음
- 또한 '22년 외 사업연도는 영업을 위한 수익활동이 전무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제납현황) '22년 법인세 1,048백만원 무납부 고지 후 현재까지 체납 상태이며 무납부 고지서와 독촉장은 '23.7월부터 반송되어 팩스 교부 송달 처리되었으며 수렴자는 관계 회사의 근로자로 확인됨
- 부동산 투자체권 950백만원과, 대표자 가지급 체권 2,550백만원은 압류 상태이며 '22년 말 기준 ㈜ 의 부채로 차임금 1,050백만원이 존재
- O (채권 회수내역) 현재 (称) (称) 등에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나고 주장하나
- 이에 대하여 구두상으로만 주장할 뿐 채권회수를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며 '22년 기준 보유한 채권임에도 현재까지 회수 이렇이 없음
- (사업의 지속성) '22.10월 투자금 출금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영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사업자동복증상 소재지 외에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 활동 내역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링 제15조 제2항 제5호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자 등록 말소함이 타당함

Ⅲ. 조사자 의견

위와 같이 사업장 현황 검토한 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자 등록 말소 처리하고자 합니다.

2024. 09. . 위 확인자 : 급

서울지방국세청장 귀하

Text O (금융거래 추적조사) B법인은 주식처분이익을 두 차례에 걸쳐 수표

Text 출금, 전표 조회하였으나 실제 출금자도 확인불가(대표이사 필체×)

Text - 수표 수취인들은 '모두 B법인을 모르고, 수표를 얻은 사유가 투자금

Text (B법인 주장)과는 무관'하며 모두 제각각이었음

Table

증거 수표 추적내역 → 귀속자불분명

출금일	지급일	금액(원)	최초수취인	수표취득처
2022.04.29	2022.05.06	○억○만원	한국투자증권(주)	확인불가
2022.04.29	2022.05.12	○만원	0 00	확인불가
2022.10.05	2022.10.05	○억○만원	최ㅇㅇ	확인불가
2022.10.05	2022.10.11	○만원	조〇〇	개인정보 도용
2022.10.05	2022.10.21	○억○만원	김ㅇㅇ	조〇〇
2022.10.05	2022.10.26	○억○만원	0 00	확인불가
2022.10.05	2022.10.26	○만원	윤 () (조00
2022.10.05	2022.10.28	○만원	정ㅇㅇ	조〇〇
2022.10.05	2022.10.31	○억○만원	권○○	확인불가
2022.10.05	2022.11.07	○억○만원	0 00	김〇〇
2022.10.05	2022.11.07	○억○만원	0 00	김〇〇
2022.10.05	2022.11.14	○억○만원	한국투자증권(주)	확인불가
2022.10.05	2022.12.02	○만원	장ㅇㅇ	확인불가
2022.10.05	2023.03.09	○억○만원	정이이	○ ○ 대부(주)
2022.10.05	2023.04.04	○억○만원	김ㅇㅇ	확인불가
소계		○○억○만원		
				·

Text O (투자금 주장 반박논리) 만약 B법인의 주장대로 유출된 금액에

Text 대한 상대 계정을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지출**

Text 사유 및 거래 사실관계 소명 없이 수표의 수취인이 존재한다는

Text 이유만으로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면,

Text - 본 건과 같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부터

Text 고의적으로 유출된 금액에 대해서까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없게

Text 되어 제도의 취지를 간단히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피력함

Text * 일반적인 회계기준에서 투자자산으로 계상할 금전을 대표자의 대여금을 Text 빌려 다시 법인의 투자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정상적인 거래내용이 아님

Text ○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 주식처분이익 ○○원이 발생하여

Text 고액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사외유출한

Text 악의적 편취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였으며,

Text - 심의팀과 진술 참여로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을 이끌어내어,

Text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함

Table フォス

결정 판단 中

- ① 조사관서의 조사 결과, <u>쟁점금전은 모두 수표로 인출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소명 내역과 달리 투자처에 귀속된 것이 아닌 제3자 개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u>
- ② 귀속된 개인들 모두 조사관서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청구법인을 알지 못하며, 투자금조로 쟁점금전을 수취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 ③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현재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u>쟁점금전이 조** 등을 통한 청구</u> 법인의 투자 등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④ 청구법인은 <u>2022년 사업연도 유가증권 처분이익 ○○억원이 발생하여 고액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쟁점금전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u>
- ⑤ 청구법인이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파마(주)는 2023년 감사의견 거절 및 2024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 쟁점금전이 추후 청구법인 에게 온전히 귀속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u>또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u> 대표이사이자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최**으로부터 쟁점금전을 회수 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관서가 쟁점금전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쟁점금전을 대표자인 최<u>**</u>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Special

적출④

❖ 명의신탁증여의제 (항목코드: 50203)

(명의신탁) 지인 · 인척 명의로 보유한 차명주식 증여세 과세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O (언론보도)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 J법인의 지분을 '사주의 처

Text 김 O O'이 보유(100%)하고 있지만, 실질적 대주주는 '사주 K'라고

Text 보도된 점에 착안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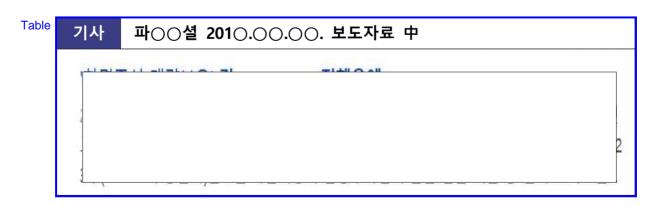
Text - 사주 K의 **주식 차명보유**와 사주의 처 김〇〇에 대한 **편법 증여를**Text **검증하는 방향**의 실효성 있는 조사를 계획함

 기사
 데○○한국 202○.○○.○ 보도자료 中

 현재
 의 최대주주는 김
 대표(100%)지만, 세간에는 김
 대표와 친족관계인 김

 회장이 실질적인 대주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때 전국구 조직폭력배 두목과 긴밀한
 관계라며 이름이 오르내린 적도 있다.

Text - 사주 K가 과거 자본시장법 위반 신주인수권 차명보유로 집행유예 Text 선고받은 보도된 점에서도, 사주 K의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 명의신탁 Text 행위가 다수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함



Text ○ (공시자료) J법인이 '최상위 기업'인 점, '최상위기업 J법인의 주주'가

Text 「사주의 처 김○○(*1)'라는 연결감사보고서에서 확인함

Table

공시 연결감사보고서 中

- 33. 특수관계자 거래
- (1)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子 世	5 8	미끄	
최상위 주주 및 그 친족	김 (*1), 김 ·(*2)	(*1,2)	
최상위 기업	(x)	(*3)	
자상위 기법	(₹)		

Table

공시 연결감사보고서 中

(*1) 최상위기업인 (주)

의 최대주주입니다.

(*2) 2018년 이사회에서 투자유치, 신규사업 발굴, 기타 회사 중요 경영사항 의사결정 자문 등을 업무범위로 하 며 비듬기임원(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회사는 당기 중 직제규정 등을 개정하며 경영고문으로서의 공식적인 권 한과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최상위 주주의 친족관계에도 해당되는 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 관계자로 분류하였습니다.

(±3) (#) 의 최대주주입니다.

Text O (신고자료) [법인(비상장)은 '14년 부동산업으로 설립 이후 구체적인

Text 사업활동이 전혀 없는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주조사법인을

Text 포함한 2개 회사를 통해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최상위 기업임

Table

신고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연도별 요약

■ 개업일 : '14.05.02 ■ 업종 : 부동산/부동산매매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자산	부채	자본금
2023	_	△26	16,988	15,752	550
2022	_	47	19,827	18,517	550
2021	_	△49	8,682	7,206	550
2020	_	△73	8,563	7,086	550
2019	_	△ 54	4,567	3,016	550

I법인의 주식은 주식변동이력 상으로는 당초 **사주의 처 김**〇〇**와**

Text 사주의 조카 박〇〇이 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회되었고,

Text **|**¾ J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14년 이후 제출된 바 없어 주식 Text 변동이력 확인이 불가능, 연결감사보고서상으로 '20년말이후 최상위 기업의 주주가 사주의 처 김○○라는 사실만 확인됨

Table

신고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원, 주)

(-, 1 /		_				
다	이후	'20년 말	'15~	크말	'14년	주주
]	지분율	주식수	'19년	지분율	주식수	사항
사주의 처	100%	1,100,000	2	50%	550,000	김ㅇㅇ
사주의 조카	0%	_	·	50%	550,000	박ㅇㅇ

* 박○○은 '14.5월 제3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증권거래세를 신고, '14.12월 박○○는 유상증자도 참여한 것으로 조회

Text - 사주 K의 조사이력에서 **또다른 주식 관련 명의신탁 증여세 내역**이

Text 확인되는 점, 조카 박○○은 주식 인수 당시 나이가 어렸고 소득이

Text 많지 않아 **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면,

Text - 사주 K가 그룹 지배구조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 뿐, J법인을 통한

Text 그룹의 장악은 사주 K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J법인의

Text 실질적인 주주를 사주 K로 보아 명의신탁 검토함

Text - 한편, 사주의 조카 박○○이 '14.5월 J법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양수한

Text 것이 아니라 '사주의 처 김〇〇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Text 19.7월 기한후신고 내역이 확인됨

Table 신고 신고서 목록 [CB06]

3	본화 [°] 관리		- 1	구최 [별지 제10호서식] (2019.03.20 개정)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기본세을 적용 증여재산 신고 []기한내신고 []수정신고 [√]기한	용)		(04.0000)
(-	목의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 ① 성 명	하시아입니다. 박	③ 거 주 구	분 [√	(앞쪽 주자[]비거주자
수	8	자	④ 주 소	사 구 로 길 (동, 빌딩)	⑤ 전자우편국	5소	
			⑥ 전화번호		⑦ 증여자와의	관계	무관계
			⑧ 성 명	김 ②주민등록번호 -	① 중 여 일	자 2	2014-04-30
5	여	사	① 주 소	도 구 대로 , 동 호(동, 마을 단지)	② 전 화 번	호	
H	리	무인	③ 성 명⑥ 전화번호	¹³ 사업자등록번호	(9 관 리 번	章	
=				중 여 재 산			
0	재산	19	재산종류 19 2	목 또는 설 소재지·법인명 등 불·재산국 외 자 산국 외 재 산 를 여 부국 가 명	ⓒ 수 량 (면 잭)	② 단 가	Ø 3 9
XI	1	10000		(주) 1 1 (이 (V)부 (주)	50,000	500	25,000,00

Text - 사주의 처 김ㅇㅇ가 박ㅇㅇ의 명의로 [법인 주식 차명보유했을

Text 혐의도 염두에 두고, 사주의 처 김〇〇에 대한 사주 K의 **주식 취득**

Text 자금 편법증여 가능성도 고민하면서, 면밀하게 사전 검토함

Text O (관련 법령,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Text 다하기 위해 다수의 물증 확보에 노력하고, 자금흐름을 적극 검토함

Table 법령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Table 판례 대법원 2009두5404, 2009.09.24.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그 <u>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u>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O (과세증거 및 참고자료 수집) 주식을 최초 취득 또는 양수도 하는

Text 과정에서 작성할만한 계약서, 신고서, 납부영수증, 주주명부,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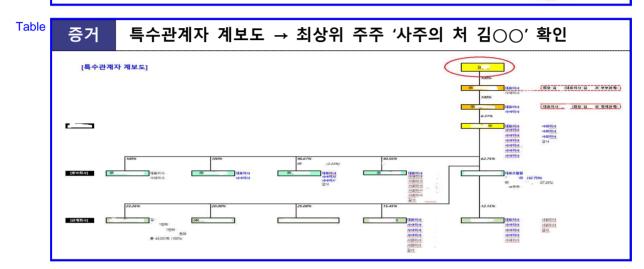
Text 변동상황명세서 등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노력함**

Text - 일시보관 자료에서 사주의 처 김〇〇이 주식 100%를 보유한 내 Text 용의 '주주명부'와 '특수관계자 계보도'를 확보하고

Text - 탈세행위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직.간접 서류를 긴 시간 공들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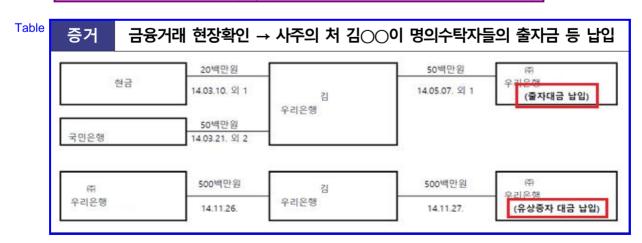
Text 수집한 결과, J법인 주식의 실소유자가 '사주의 처 김〇〇'이라는

Text 결정적인 물증 확보에 성공함



Text O (자금출처 확인) 조사팀은 조사대상자 J법인을 포함하여 주조사법인,
Text 관련인, 사주일가, 명의신탁 혐의자 등 총 49명에 대한 철저한 금융
Text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자금흐름을 분석

Text 사주의 처 김〇〇의 자금이 박〇〇과 본인의 J법인 주식을 취득하는데
Text 입금된 사실을 금융추적을 통해 확인하고, 추적과정에서 확인된
Text 현금 증여부분은 범위확대하여 빈틈없는 조사를 진행함



Text O (관련인 확인서 정취) 사주의 처 김〇〇로부터 명의신탁 방식으로 Text 주식을 차명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음

Text - 사주 K로부터는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Text 제출받아 쟁점 차명주식이 사주의 처 김〇〇의 소유라는 **사실관계에**

Text 이견이 발생할 수 없도록, 과세처분에 여러번 신중을 기함

Table

증거 확인서 → 실소유자 본인 인정

확 인 서

-2 21

상기 본인은 현재 실명으로 ㈜ 주식 1,100,000주 (100%), 소유하고 있으 다, 해당 주식 이외에 (주) 및 (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은 일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 및 ㈜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 인을 통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제반 법률에 반하는 방법으 로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위 확인인

김

